

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(제22조 관련)

배치대상	배치기준
1. 진흥원, 시·도진흥원	○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
2. 장애인평생교육시설	○ 평생교육사 1명 이상
3. 시·군·구평생학습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규직원 20명 이상: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○ 정규직원 20명 미만: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
4.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)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·법인 또는 단체	○ 평생교육사 1명 이상